



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·시설 확인서

1. 제품·시설명:
2. 기관명:
3. 대표자:
4. 소재지:
5. 인증기술명:
6. 신기술 적용제품·시설 확인번호:

위 제품·시설은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
신기술 적용제품·시설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